

기안용지

분류기호
분서번호 **문재1082-** (전화번호 75.2154) 전 결 규 정 결 조 항

처리기간 **시** 자

시행일자 **6월 9일**

보존년한

보조기관
제1부시장 **김민**
문화공보관 **김영**
문화재담당관 **김영**

협
고서안심실
법무담당관
법제과장

기안책임자 **이수천 77. 8. 10** 조

경유
수신조 **각안참조** **공시제 325호** 통

제목 **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위원회 결과보고 및 지정**

제1안

수신 **내부결재**

제목 **위와같음**

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며 심의 결과에 의한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로 지정고시코자

합합니다.

1. 회의일시 : 77. 8. 26. 14:00

2. 장소 : 기획상황실

3. 참석자 : 제1부시장
문화재위원 7명
관계공무원 6명

4. 회의결과 내용

가. 77년도 문화재 보수공사 준공사항 및 보신각

보수정화계획 "안" 보고

나. 지방문화재 지정 심의

1) 한옥 5동: 현지 답사후 4동을 서울특별시 민속자료로 지정 보존키로 결정 함

2) 우암 송시열 초구(령): 서울특별시 민속자료로 지정 보존키로 결정 함

3) 우암 송시열 구기 친필 각자: 서울특별시 지방기념물로 지정 보존하고 보호구역은 동일 지번으로 한다.

4) 도선사 석불: 서울특별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고 보호구역은 석불(조각된 바위) 하부 기석으로 부터 15m로 한다.

5) 세검정 일대 늪나무: 멸종 위기에 있는 늪나무 보호를 위해 세검정 일대 9개 지역으로 분포된 늪나무 서식지 중 가능한 사유재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 제한 구역내 1개 서식지 (종로구 부암동 2-1) 만 지방 기념물로 지정 보호키로 함.

6) 구 황실 별장 정원 (성북구 성북동): 문화재위원 전원에게 현지 답사 한바 한쪽의 전통적인 정원을 구성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외래색이 가미된 부분이 있어 지정은 일대 보존하고 소유자와 협조를 얻어 외래색이 가미된 부분을 제거한 후 검토지정 기르 함.

7) 백악전 및 화경대: 보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.

나. 회의결과 처리방침

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중 지정 여부를 최종 검토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로 지정 고시. 보존권자 함.

각 지정내용

종별	지정 번호	명칭	수량	소재지	소유자및 관리자	제조및 건축연대	전형및 규격	보호구역
지방 민속자료	24	제기동 정규엽가	1곽	동대문구 제기동224	정규엽	1900	79 ^{cm}	제기동224일원 (719 ^{cm})
"	25	장위동 김진홍가	1곽	성북구 장위동76-59	김진홍	1860	107 ^{cm}	장위동76-59일원 (759 ^{cm})
"	26	우암동시열 초구1령	1곽	종로구 익선동166-77	정해동	1658	발전기장 184 ^{cm} 등돌길이 95 ^{cm}	
지방유형 문화재	34	도선사 석불	1구	도봉구 우이동264	도선사 주지 이해서	조선중기	신고 843 ^{cm} 전통 288 ^{cm}	석불하부개성연 부위 15 ^{cm} 이하
지방 유형	5	우암동시열 라마비 및 석조	라마비 및 석조	종로구 익선동264	이우동	1600		명동1가 2-24 일원 (약 20 ^평)

- 첨부
1. 지방문화재 지정고시 "안" 1부
2. 회의록 1부
3. 회의자료 1부 끝

제2안
수신
제 목
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홍보
대하
가 사 드립니다
2. 당시에서는 그동안 민족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
해 가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읍니다. 근번 우리 조상들의
"얼"이 담겨져 있고 생활 문화가 깃들여 있거나 역사
적 예술성이 있는 문화재를 발굴 보존키 위하여 조사 검토
한바 귀하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다음 표시된 사항
은 문화재로 지정 보존 가치가 있어 이를 문화재 보호법
과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전체에 의거. 서울특별시

지방 문화재로 지정하고, 귀하게 알려드리며, 지정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. 아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지정 표시 내역

(1) 안 해당 사항 발취 이기 시행)

지정번호	종별	명칭	수량	소재지	소유자또는관리자	보호구역

나. 지켜 주실 사항

1) 지정된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보호구역내에서 현상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당시와 협의 승인을 받으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

2)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변동되었거나 기타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
수신처

- 지방 문화재 지정서 1부
- 동대문구 제기동 224 정국영
- 성북구 장위동 76-59 김진홍
- 종로구 익선동 166-77 정해동
- 도봉구 우이동 264 도연사 이혜영
- ~~종로구 평릉동 100-24 아우동~~

결재

제3안
수신처
제목

수신처 한도

서울특별시 지방 문화재 지정동일

1. 문화재보호법 제54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지방 문화재 보호 조례 제6조 및 동 제7조,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을 지정하였기 동분하여 귀 소관 각 종 공문에 기록 정비하여 업무에 참고 하기를 바라며, 문화재 보존 관리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지정내용

"안" 지정내용 이기시행 끝

첨부
수신처

도면1부 (동대문, 성북 ... 기타는 제외)

재무국 (세정과, 세무조사과)

도시정비국 (도시계획과, 도시정비과, 건축지도과)

종로구청 (홍무과, 시민과, 사무과, ~~도시정비과~~)

동대문 (")

성북 (")

도봉 (")



제안안

수신
참조
제목

문화공보부 장관

문화재1.2과장



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지정보고

1. 문화재 보호법 제54조의 2 및 당시 문화재보호
조례 제6조 및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
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를 지정 하였고 보고 합니다.

가. 지정내용

제1안 지정고시 "안" 이기시행 끝

고 시 안

서울특별시	1977. 9. 5.	제 287 호
담당지	도시계획	남부담당관
	전 결	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고시

문화재보호법 제54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
 보호조례 제6조, 제7조,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
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
 지정 고시 한다.

1977. 9. 5.
 서울특별시 장

< 지정 목록 >

종별	지정 번호	명 칭	수량	소재지	소유자또는 관리자	주소	보호구역
지방 민속자료	24	제기동 정규업가	1 과	동대문구 제기동 224	정규업	화 동	제기동 224 일원 (719평)
"	25	장위동 김진홍가	1 과	성북구 장위동 76-59	김진홍	화 동	장위동 76-59 일원 (759평)
"	26	용강동 이화정가	1 과	마포구 용강동 287-2	이화정	화 동	용강동 287-2 일원 (208평)
"	27	시흥동 정봉주	1 과	영등포구 시흥동 220-2	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대운정봉주	종로구 세종로 178	시흥동 220-2 1,778평 (784평)
"	28	우암 송시열 초구 1경	1 차	종로구 익선동 166-77	정해동	화 동	
지방 유형문화재	34	도선사 석불	1 구	도봉구 우이동 264	도선사 주지 이혜성	화 동	석불 하부 기석으로 부러 15킬로다
지방 기념물	5	세검정 일대 등나무		종로구 부암동 74-1	엄자경	화 동	부암동 75-1 일원 (약 3,000평)
"	6	우암 송시열 유서 일대	하마비 벽 각자	종로구 영등포구 2-24	이우동	화 동	영등동 1가 2-24 일원 (약 20평)